

2019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신·구대조표

현행 (2018)	개정안 (2019)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제243호 2018.03.01., 제195호 2017.03.01., <u>제169호 2016.04.05.</u>)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u>제280호 2019.03.01.</u>, 제243호 2018.03.01., 제195호 2017.03.01.)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p>
<p>제2조(기본 방침) ④외부에서 제작한 평가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 유의한다.⁴⁴⁾</p> <p>⑤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p> <p>⑥학업성적 평가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u>정</u>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관리 및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p> <p>⑧본 지침과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u>학교별</u>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p>	<p>제2조(기본 방침) ④외부에서 제작한 평가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²⁾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분 수정> ⑤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신설> ⑥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고,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신설></p> <p>⑦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p> <p>⑧학업성적 평가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u>으로</u>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관리 및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p> <p>⑨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자율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및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서도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 <u>학교별</u>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신설></p> <p>⑩본 지침과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②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p>	<p>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②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u>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u></p>
<p>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③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p> <p>④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⑤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③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³⁾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u>각주3) ‘교무분장’이라 함은 부서별 또는 교과별 업무분장을 의미한다. <신설></u></p> <p>④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u>학업성적관리의</u>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⁴⁾ <u>각주4)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신설></u></p> <p><u>⑤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신설></u></p> <p>⑥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제5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개정 2.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⁴⁵⁾, <u>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u>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u>각주45) 장기결석일수(지각, 조퇴, 결과횟수 포함), 정근의 출결 관련 횟수,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범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입력 대상 범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 여부 및 이수 기준 등이 있다.</u></p> <p>8. 학생선수 및 <u>학교 밖 훈련종목 학생선수</u>의 대회 및 훈련과 관련한 사항</p>	<p>제5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u>제·개정</u> 2. 각 <u>교과(학년)</u>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⁵⁾,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u>각주5) 장기결석일수(지각, 조퇴, 결과횟수 포함), 정근의 출결 관련 횟수,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범위(2019학년도 2,3학년만 적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입력 대상 범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 여부 및 이수 기준(2019학년도 2,3학년만 적용) 등이 있다.</u></p> <p>8.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과 관련한 출결 및 성적</p>
<p>제6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u>교육부령 제148호 2018.02.26. 일부개정 및 2018.03.01.시행</u>),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p>	<p>제6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u>같은법</u>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u>제177호 2019.3.11.시행 2019.3.11.일부개정</u>),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u>제280호 2019.03.01.</u>, 제</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2018.03.01., 제195호 2017.3.1., <u>제169호 2016.4.5.</u>), ~~~ 맞게 <u>개정·보완한다.</u></p> <p>②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u>정기적으로 개최하여</u>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p> <p>③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p> <p>④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p>	<p>243호 2018.03.01., 제195호 2017.03.01.), ~~~ 맞게 <u>제·개정</u>한다.</p> <p>②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u>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여</u>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u>또한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개최 시기를 명기한다.</u></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⁶⁾ <신설></p> <p><u>각주6)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위원회에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으로 학부모위원의 참여가 제한된 경우 학부모위원을 제외한 위원수 재적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u></p> <p>④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p> <p>⑤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신설></p> <p>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p>
<p>제7조(수업일수)</p> <p>⑤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⁴⁷⁾</p> <p>⑥귀국학생 등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⁴⁸⁾ 제5조에 ~~~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제7조(수업일수)</p> <p>⑤재입학·전입학·<u>편입학</u>·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u>편입학</u>·복학이 불가능하다.⁸⁾ 단, 귀국학생은 본 지침 제7조6항에 따른다.</p> <p>⑥귀국학생 등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⁹⁾ 제5조에 ~~~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¹⁰⁾</p> <p><u>각주10) 귀국학생 중도 재취학·편입학생의 해당학년 수료 기준 수업일수 :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해당학년을 수료함. <신설></u></p>
<p>제8조(결석 처리)</p> <p>①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4. ‘출결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p>	<p>제8조(결석 처리)</p> <p>①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4. ‘출결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u>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u>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u>조치 결정일자(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u> 입력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⁴⁹⁾</p> <p>1. 지진, 폭우, ~~~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⁵⁰⁾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p> <p>각주50) 학교 내 확산 방지 조치로 사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p> <p>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⁵²⁾,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u>현장(체험)학습⁵³⁾</u>, 「학교보건법」 제8조⁵⁴⁾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p> <p>5.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6항⁵⁶⁾의 규정에 의한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p> <p>※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u>무단결석</u> 처리함.</p> <p><u>각주52)</u> 2018학년도 학교 운동부 업무 매뉴얼 24쪽 참조</p>	<p>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¹¹⁾</p> <p>1. 지진, 폭우, ~~~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¹²⁾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p> <p><u>각주12)</u> 학교 내 확산 방지 조치로 사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u>고사기간에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독감 등) 해당 학생은 고사기간 중 고사에 응시해야 하고, 미응시한 경우 출석은 인정하며 인정점은 질병결시에 준하여 부여한다. <부분 신설></u></p> <p><u>각주13)</u>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를 말한다. <u>단, 현역병 자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 기타결석 등으로 처리함. <부분 신설></u></p> <p>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u>대회 및 훈련 참가¹⁴⁾</u>,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u>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u>), 교환학습, <u>교외체험학습¹⁵⁾</u>, 「학교보건법」 제8조¹⁶⁾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p> <p>5.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6항¹⁸⁾의 규정에 의한 <u>상당, 진로 프로그램 등</u>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p> <p>※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u>미인정결석</u> 처리함.</p> <p><u>각주14)</u> •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학습 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3분의 1을 초과해 허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p>※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또는 체육단체 등록 학</p>

현행 (2018)	개정안 (2019)
-----------	------------

각주53) 개인 체험학습과 관련한 절차 및 기간, 결과 처리 방법 등을 당해 **학교 학칙**에 명시하여 추진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인 경우 ~~

생선수에 적용함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190일~191일은 63일, 192일은 64일 허용 가능함.

-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①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63일 또는 64일)에서 4일 제외함.

②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 학생선수가 조퇴 1회와 결과 2회를 한 경우 합산이 3회가 되므로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 서 1일 제외함.

※ 학생선수 당해 학년도 허용일수(63일 또는 64일) 적용 방법은 공결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수업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의 경우 당해 학년도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생선수가 함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

2019학년도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건강과-1420(2019.2.7.)) 참조

각주15) 교외 체험학습과 관련한 절차 및 기간, 결과 처리 방법 등을 당해 **학교규정**에 명시하여 추진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¹⁹⁾

각주19)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

현행 (2018)	개정안 (2019)
<p>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⁵⁷⁾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p> <p><u>각주57)</u> 학교폭력예방 ~~~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심리상담 및 조언</p> <p>각주60)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p>	<p>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²⁰⁾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u>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u>,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p> <p><u>각주20)</u> 학교폭력예방 ~~~ 보고하여야 한다.</p> <p>1. <u>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u></p> <p><u>각주23)</u>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u>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u>(소년법 제1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임무), 제3항제3호, 제31조(학적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부분 신설></p>
<p>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p> <p>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p> <p>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u>단, 교사기간 중 질병결석의 증빙자료는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다.</u>)</p> <p>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²⁴⁾(단,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 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신설></p> <p><u>각주24)</u>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신설></p>
<p>④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무단</u> 결석으로 처리한다.</p>	<p>④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미인정</u> 결석으로 처리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학원수강⁶¹⁾ 등)</p> <p>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⁶²⁾</p> <p>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⁶³⁾</p> <p>4.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중 지필고사 기간의 결석</p>	<p>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²⁵⁾</p> <p>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²⁶⁾</p> <p>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 학습 기간</p> <p>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²⁷⁾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구금 구류포함), 교도소 수감 등)</p> <p>5.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p> <p>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²⁸⁾</p> <p>7.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중 지필고사 기간의 결석</p> <p><u>각주25)</u>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 전학 9.퇴학처분 <신설></p> <p><u>각주26)</u>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내의 봉사 2.사회봉사 3.특별교육이수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 <신설></p> <p><u>각주27)</u>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p> <p><u>각주28)</u>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신설></p>
<p>제9조(지각 · 조퇴 · 결과 처리)</p> <p>②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이다.⁶⁵⁾</p> <p>⑤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p>	<p>제9조(지각 · 조퇴 · 결과 처리)</p> <p>②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u>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u>에 하교한 경우이다.</p> <p>⑤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p> <p>각주67) 예시: 무단, 질병, ~</p>	<p>동일하게 질병, <u>미인정</u>, 기타로 처리한다.</p> <p><u>각주65)</u> <삭제></p> <p>각주31) 예시: <u>미인정</u>, 질병, ~~~</p>
<p>제10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①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p> <p>각주32) <신설></p> <p>각주33) <신설></p>	<p>제10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①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³²⁾·평가기준³³⁾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수정></p> <p><u>각주32)</u>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p> <p><u>각주33)</u> ‘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p>
<p>②성취기준이란 ~~~ 재구조화할 수 있다.</p> <p>각주34) <신설></p>	<p>②성취기준이란 ~~~ 재구조화³⁴⁾할 수 있다.</p> <p><u>각주34)</u>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신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p>
<p>③ 교과별 ~~~ 작성한다.</p> <p>각주35) <신설></p>	<p>③ 교과별 ~~~ 작성한다.³⁵⁾</p> <p><u>각주35)</u> ‘단위/영역별 성취수준(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기 단위 성취수준’)은 각 단위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신설></p>
<p>④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⁶⁸⁾와 수행평가³⁹⁾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p>	<p>④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호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³⁶⁾</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⑤‘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후략)</p>	<p>1. 2015 개정교육과정 :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³⁷⁾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p> <p>2. 2009 개정교육과정 :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 중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p> <p>각주3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5. 참조</p> <p>각주37)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은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진로선택의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전문교과Ⅰ의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를 말한다. <수정 및 신설></p> <p>⑤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신설> <p>⑥[2019학년도 2, 3학년 적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 <부분 수정> <p>⑦[2019학년도 1학년 적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현행 (2018)	개정안 (2019)
	<p>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별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신설></p> <p>⑧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신설></p> <p>⑨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신설></p> <p>⑩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³⁸⁾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계획은 학교·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내용,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4.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의 처리 기준 등 <신설> <p>각주38) 평가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필평가 없이 이수/미이수 처리하는 교양교과도 교과운영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평가는 실시하나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13명 이하 소인수 과목도 평가계획 수립 -영역별 배점 및 비율은 교과 특성, 단위수, 영역별 세부기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타당성, 신뢰성을 담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지필평가 1회 실시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교육과정 운영 부실 및 수행평가 실시 시 학급 부담에 유의하여야 함 <신설> <p>⑪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 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³⁹⁾ <신설> 각주39) 확정된 평가계획은 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시기·영역·기준·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p> <p>⑫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내 각종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신설></p>
<p>⑨평가 실시 전에 ~~~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⑩학생선수 및 ~~~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p>	<p>⑬평가 실시 전에 ~~~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⑭학생선수 및 ~~~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p>
<p>⑪도제학교의 경우 (학생 평가) 교사, 기업현장교사 등이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며, 구체적 평가방법은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명시한다.⁷⁰⁾ ※ 도제교육 참여 학생은 비참여 학생과 별도 성적 평가</p>	<p>⑮도제학교의 경우 (학생 평가) 교사, 기업현장교사 등이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며, <u>도제교육 참여 학생은 비참여 학생과 별도 성적 평가하고 구체적 평가방법은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명시한다.</u>⁴⁰⁾</p>
<p>제11조(수행평가) ①교과협의회에서는 ~~~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u>학교</u>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p>	<p>제11조(수행평가) ①교과협의회에서는 ~~~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u>하여야 하며, 수행평가 계획을 평가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p>②교과담당교사는 <u>학교</u>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략) ④수행평가의 ~~~ 부여할 수 없는 경우(무단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 기준을(후략) ⑤ <신설></p>	<p>②교과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략) ④수행평가의 ~~~ 부여할 수 없는 경우(미인정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 기준을(후략) ⑤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일람표’ 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하여 확인한다. <신설></p>
<p>⑤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⁷¹⁾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후략) <u>각주71)</u>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p>	<p>⑥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⁴¹⁾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후략) <u>각주41)</u>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u>성적 기록 자료</u>(성적일람표 등)를 의미한다. ⑦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의 보관 기간을 결정</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하며, 학생들의 <u>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u>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결정된 보관기간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p> <p><u>⑧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며, 과제형(숙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제형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및 구체적 운영 방법, 성적 처리 방법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운영한다. <신설></u></p>
<p>⑧수행평가를 할 때 ~~~ (후략)</p> <p>⑨수행평가는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의 ~~~ (후략)</p> <p>⑩실연(實演)을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현장의 여러 학생 앞에서 <u>평가결과를 공개한다.</u></p> <p>⑪실험·실습, 실기 및 관찰 등에 ~~~ (후략)</p> <p>⑫신체장애 학생(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은 본 지침 제32조에 따라 ~~~ (후략)</p> <p>⑬학적 변동으로 인한 ~수행평가 처리기준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후략)</p>	<p>⑨수행평가를 할 때 ~~~ (후략)</p> <p>⑩수행평가는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의 ~~~ (후략)</p> <p>⑪실연(實演)을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현장의 여러 학생 앞에서 <u>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u></p> <p>⑫실험·실습, 실기 및 관찰 등에 ~~~ (후략)</p> <p>⑬신체장애 학생(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은 본 지침 제32조에 따라 ~~~ (후략)</p> <p>⑭학적 변동으로 인한 ~수행평가 처리기준은 <u>평가계획에 반영하되,</u> 교과협의회를 통하여~(후략)</p> <p>⑮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u>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신설></u></p>
<p>제12조(정기고사)</p> <p>①학교는 제10조제4항에 근거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각 교과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p>	<p>제12조(정기고사)</p> <p>① ..</p> <p><u>각주 42)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타당도 및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횡수를 정해야 할 것임. <부분 수정></u></p>
<p>제13조(평가문제 출제)</p> <p>②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u>이원목적분류표</u>를 작성하여 활용하되, ~~~ (후략)</p>	<p>제13조(평가문제 출제)</p> <p>②<u>지필평가</u>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u>제고할 수 있도록</u>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u>문항정보표</u>를 작성하여 활용하되, ~~~ (후략)</p>
<p>③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여 동점자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며, 문항 당 배점을 다양화 하고 난이도별 배점을 적정화한다.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p>	<p>③<u>지필평가</u>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며,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u>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u></p>
<p>④교사원안 제출 시에는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u>혹은</u> 성취기준 번호), 행동영역,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및 채점기준이 명시된 <u>이원목적분류표</u>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후략)</p>	<p>④교사원안 제출 시에는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u>또는</u>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및 채점기준이 명시된 <u>문항정보표</u>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후략)</p>
<p>⑪성적처리가 끝난 교사원안지와 <u>이원목적분류표</u>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해당 학생이 학교</p>	<p>⑪성적처리가 끝난 교사원안지와 <u>문항정보표</u>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u>5년 간</u> 당해 학교에 보</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를 졸업한 후 <u>1년 이상</u>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p>	<p>관한다.⁴³⁾</p> <p><u>각주43)</u>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7460호, 2016.8.29. 일부개정) 제26조(보존기간) 제3항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이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 기간을 기산한다. <신설></p>
<p>제14조(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관리)</p> <p>③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보안유지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관리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p> <p>5. 고사 원안, <u>이원목적분류표</u> 열람 등 ~~~ (후략)</p> <p>④학교장은 평가문제 ~~~ (후략)</p> <p>5. 보안 관리 점검표를⁷⁵⁾ 활용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p> <p><u>각주75)</u> 부록 <별첨 3> <u>2018</u> 정기고사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p>	<p>제14조(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관리)</p> <p>③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보안유지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관리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p> <p>5. 고사 원안, <u>문항정보표</u> 열람 등 ~~~ (후략)</p> <p>④학교장은 평가문제 ~~~ (후략)</p> <p>5. 보안 관리 점검표를⁴⁶⁾ 활용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p> <p><u>각주46)</u> 부록 <별첨 3> <u>2019</u> 정기고사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p>
<p>제15조(고사 시행 및 감독)</p> <p>③감독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되, ~~~ (후략)</p> <p>⑩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서명하여 평가업무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업무 담당 교사는 답안지를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⁷³⁾</p> <p><u>각주73)</u> <u>선다형</u>과 서·논술형 답안지는 분리가 원칙이되, 불가피하게 <u>선다형</u>과 서·논술형 답안지가 일체형일 경우에는 우선 <u>선다형</u> 채점 후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p>	<p>제15조(고사 시행 및 감독)</p> <p>③감독교사는 <u>복수감독 배치가 원칙이며</u>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되, ~~~ (후략)</p> <p>⑩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서명(<u>날인</u>)하여 평가업무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업무 담당 교사는 답안지를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⁴⁸⁾</p> <p><u>각주48)</u> <u>선택형</u>과 서·논술형 답안지는 분리가 원칙이되, 불가피하게 <u>선택형</u>과 서·논술형 답안지가 일체형일 경우에는 우선 <u>선택형</u> 채점 후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u>인계 인수 시 답안지 매수를 철저히 확인한다.</u></p>
<p>제17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p> <p>②서술형·논술형 등의 ~ (중략) ~ <u>그 평균 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⁷⁴⁾</p> <p>⑤<u>채점을 하는 과정</u>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신설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p> <p>⑦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해당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u>1년 이상</u>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p>	<p>제17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p> <p>②서술형·논술형 등의 ~ (중략) ~ <u>협의를 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u>⁴⁹⁾</p> <p>⑤<u>채점 과정에서</u>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신설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u>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u> 받아 적용한다. <수정></p> <p>⑦성적 처리 <u>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 학생</u>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u>5년간</u>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⑧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신설></p> <p>⑨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⁵⁰⁾ <신설></p> <p>각주50)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 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하여 확인한다.</p>
<p>제18조(인정점 부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⁷⁵⁾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①~⑤ <신설></p>	<p>제18조(인정점 부여)</p> <p>①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⁵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u>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준하여 처리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u></p> <p>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⁵²⁾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⁵³⁾, 교환학습으로 인한 결시 4. 「학교보건법」 제8조⁵⁴⁾에 따른 등교중지 및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⁵⁵⁾ 5. 경조사로 인한 결시⁵⁶⁾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시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호의 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의 결시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6항⁵⁷⁾의 규정에 의한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⁵⁸⁾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현행 (2018)	개정안 (2019)
	<p style="text-align: center;">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p> <p><u>각주53)</u> 2019학년도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참고</p> <p><u>각주54)</u>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p> <p><u>각주55)</u> 고사기간에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독감 등) 해당 학생은 고사기간 중 고사에 응시해야 하고, 미응시한 경우 출석은 인정하며, 인정점은 질병결시에 준하여 부여한다.</p> <p><u>각주57)</u>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이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u>각주58)</u> 지필평가 기간에 재적교의 평가에 불참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평가의 경우는 본 지침 11조 13항을 참조한다.</p> <p>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 인정점을 부여한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질병 결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⁵⁹⁾(단,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결시한 경우 <p><u>각주59)</u>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p> <p>④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한 학생의 성적 중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인정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p>⑤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⁶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행위자 2. 부정행위 협조자 <p><u>각주60)</u> 부정행위 해당 평가 고사 과목(영역)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p>
<p>제19조(성적일람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u>2~4호</u>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전문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3.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4.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p>제19조(성적일람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양교과(군)의 과목과 <u>2호~5호</u>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2019학년도 1학년의 보통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3. 2019학년도 1학년의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전문 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4.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5.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p>제21조(석차등급, 성취도)</p> <p><u>각주68)</u> ~ 교과목별로 설정하는 경우 <u>이원목적분류표</u>를 활용하여 분할점수를 산출한다.</p> <p>② ~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u>전문교과 I</u> 포함), 전문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p>	<p>제21조(석차등급, 성취도)</p> <p><u>각주61)</u> ~ 교과목별로 설정하는 경우 <u>문항정보표</u>를 활용하여 분할점수를 산출한다.</p> <p>② ~ 단,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u>전문 교과</u> 포함), 전문 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u>원점수에 따라</u>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③ 교과별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p>	<p>③ 교과별 성취도와 <u>석차등급</u>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2009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은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2.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2009 개정 교육과정: 일반과목)은 ‘성취도(A-B-C)’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교양교과(군)는 ‘성취도’와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3.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 선택 과목’의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3단계(A-B-C)로 산출한다. 4. 전문교과Ⅱ(2009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는 성취도를 5단계(A-B-C-D-E)로 평정하며,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5. 세부적인 성적 산출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한다. <p>[2019학년도 고등학교 1,2,3학년] 각각의 표 신설</p> <p>④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학업중단 학생(자퇴, 제적, 휴학)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p>
<p>제23조(석차)</p> <p>1. 일반적으로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p>	<p>제23조(석차)</p> <p>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p> <p>[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본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p> <p>[2019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2. 과목별로 동점자가~~</p> <p>3.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p> <p>4.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p> <p>5. 공동실습소, ~~</p> <p>6. 재·전·편입학한 학생과 명예졸업생,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한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p> <p>7. 고등학교의 ~~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 ‘P’를 각각 입력한다.</p> <p>8. 기초교과 중~</p>	<p>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교육과정특성상 학과별로 교육내용이 재구성되어 학습내용, 성취기준, 평가문항(지필, 수행평가)이 모두 다른 경우를 말한다.</p> <p>2.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09/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시행한다.</p> <p>3.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동일한’ 진로 선택 과목을 ‘동일시기’에 ‘동일 단위’로 수강하는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하되, 해당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방식에 따라 성적 정보를 입력한다.</p> <p><u>각주64</u>)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한다.</p> <p><u>각주65</u>)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다. (예시)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p> <p>4. 과목별로 동점자가~~</p> <p>5.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p> <p>4. <삭제></p> <p>6. 공동실습소, ~~</p> <p>7.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p> <p>8. 고등학교의~~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 ‘P’를 각각 입력한다.</p> <p>9. 기초교과 중~</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⑧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p>	<p>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p> <p>4. 1호에서 3호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p> <p>⑧공통과목(2015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신설></p> <p>각(68) '보충 학습 과정'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포함</p> <p>⑨재취학,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p> <p>⑩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p>
<p>제26조(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p>	<p>제26조(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p> <p>①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신설></p> <p>②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기관)에 위</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①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 학교에~~ ②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수는~~ ③직업과정 위탁생의 석차산출에 있어서 ④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는~~</p>	<p>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본 지침 2.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매뉴얼 II. 학업성적관리 대책 10.기타 성적 처리 참조.) <신설></p> <p>③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 학교에~~ ④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수는~~ ⑤직업과정 위탁생의 석차산출에 있어서 ④<삭제></p>
<p>제27조(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성적 처리) ①②③④⑤⑥ 내용 변경</p>	<p>제27조(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성적 처리)</p> <p>①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②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④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입력한다. ⑤단일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와 함께 원점수(필요시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입력하거나 이수여부만을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 등을 입력한다. ⑥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p>
<p>제27조(소년보호기관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①소년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64조의 2, 제85조에</p>	<p>제27조(소년원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①소년원 학생의 학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64조의 2, 제85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p> <p>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지침~</p>	<p>③ 소년원 학생의 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지침~</p>
<p>제28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p> <p>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질병, <u>무단</u>, 기타로 구분) 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5일 이내에 소속 학교로 통보한다.</p>	<p>제28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u>같은</u>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u>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u>」에 따라 처리한다.</p> <p>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질병, <u>미인정</u>, 기타로 구분) 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5일 이내에 소속 학교로 통보한다.</p> <p><u>각주76)</u>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p>
<p>제29조(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p> <p>⑤~⑥ <신설></p>	<p>제29조(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p> <p>⑤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p> <p>⑥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p>
<p>제30조(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p> <p>③~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제30조(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p> <p>③~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u>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여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고</u>,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제32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p> <p>제32조의1 <신설></p>	<p>제32조의 1(2019학년도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①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는 사항 등)과,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다.</p> <p>②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순으로 모두 입력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p> <p>④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p> <p>⑤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p> <p>⑥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경우 단체명을 입력한다.</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p> <p>⑧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의 소논문(R&E) 실적(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다.</p> <p>⑨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p> <p><u>각주81)</u>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누가기록을 학교별 별도 서식에 따라 수기 장부로 관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서식 등을 참고하여 활용한다.</p> <p><u>각주82)</u>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p>

현행 (2018)	개정안 (2019)
<p>제32조 →제32조의 2로 변경</p> <p>①~⑦ 생략 ⑧ <신설></p>	<p>제32조의 2(2019학년도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p> <p>⑧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u>각주84</u>)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누가기록을 학교별 별도 서식에 따라 수기 장부로 관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서식 등을 참고하여 활용한다. <u>각주85</u>)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p>
<p>제33조(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p> <p>①~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p>	<p>제33조(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p> <p>④‘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한다. ⑤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p>
<p>제34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p> <p>①~② 생략 ③ <신설></p>	<p>제34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p> <p>③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p>
<p>제36조(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p> <p>②~ 다만,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 상황, 특기사항</p> <p>3. 교육부 훈령 제243호 제18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p> <p>⑦ <신설></p>	<p>제36조(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p> <p>②~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2019학년도1학년)와 인적사항(2019학년도2·3학년)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p> <p>⑥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 상황, 특기사항(2019학년도 2, 3학년) 3.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번호, 주소(2019학년도 1학년) 4. 교육부 훈령 제280호 제18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p> <p>⑦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전</p>

현행 (2018)	개정안 (2019)
	의 출력물로 한다.